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6.27.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 및 기존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장해의 등급이 기존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미 업무상재해로 인한 제45 요추간반탈출증 등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2조 제1항, 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표 2의 장해등급표상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45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어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8.2.13. 이 사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경추 부위의 이 사건 장해는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므로 기존 장해보다 가중된 장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

니하고, 그 발생원인 및 시기가 달라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장애등급 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애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장애등급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장애급여를 해야 함에도, 그 장애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애(업무상 재해 여부 불문)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재해로 새롭게 장애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애가 기존의 장애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애등급표상 기존의 장애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애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애부위)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으로 구분한 부위(장애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애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애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애와 기능적 장애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애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애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부위 및 장애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이상의 장애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제12급 제12호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현존하는 장애 역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장애 및 기존 장애 모두 '신경장애'에 대한 것으로 장애부위 및 장애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애의 등급이 기존 장애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애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